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5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정희용·서천호·강승규

김선교 • 박준태 • 최은석

이인선 • 윤재옥 • 주호영

송언석 • 박덕흠 • 이양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.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,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.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.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·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'사전적·선제적 쌀 수급 정책'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,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·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쌀 외에도 밀,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

기여하고,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, 콩 등 양곡의 유통·가공·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,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9조의3 및 제16조 의3 신설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4 신설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5 신설).
- 라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(안 제22조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·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).
- 바.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(안 제36조제1

항제1호 신설)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 곡의 매입·보관·가공·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 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 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3. 가격 안정을 위한 미곡의 생육 중 수급조절 계획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6조의3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

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·수요·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·관리 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4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생육 중 수급조절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곡의 생육 중에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곡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 게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그 밖에 미곡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 의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6조의5(미곡의 적정생산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

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지원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의 제목 중 "미곡유통업"을 "양곡유통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"을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미곡의 유통기능"을 "양곡의 유통기능"으로, "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"을 "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"으로, "미곡의 매입"을 "양곡의 매입"으로 한다.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 선·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 매입 및 매 입한 양곡의 건조·선별·보관·가공·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 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· 홍보 사업

- 2.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
- 3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
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
	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
	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
	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
	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·보관
	·가공·공급 등을 종합적으로
	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
	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・운영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
	관리시스템의 관리·운영을 위
	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정부관
	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
	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
	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
	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
	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
	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
	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
	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
	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⑦ (생 략) <신 설>

	품부	- 령	으로	정	한디	<u>}.</u>			
제	16조	(フ	구인	·정-	을	위한	. o	냙곡.	의
	수급	- 1	관리)	1					
	1 .	0	/ ニ) ニ	ו הו	1	ά \		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가격 안정을 위한 미곡의 생육 중 수급조절 계획
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 제16조의3(미곡수급관리시스템
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
 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
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
 ·수요·재고 등 수급과 관련
 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
 적으로 수집·분석·관리하기
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
 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

<신 설>

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생육 중 수급조절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생육중에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생산량을 추정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미곡 공급량을조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그 밖에 미곡 수급안정을 위 해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 산자간의 사업으로서 농림축

<신 설>

제22조(미곡유통업의 육성) ① 농 제22조(양곡유통업의 육성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 통구조개선 · 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・선별・보관・가공・판매

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6조의5(미곡의 적정생산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 을 지원하여 식량자급률을 제 고하기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 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 다)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 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 및 판 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에 대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.

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 개선·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 매 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 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.

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</u>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<u>미곡의 유통기능을</u> 능률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<u>미곡종합처리장</u> 등 미곡을 건조·보관·가공· 유통·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<u>미곡의 매입</u>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 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 <신 설>

<u>별・보관・가공・판매 능 종합</u>
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
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
<u>한다.</u>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<u>양곡의 유통기능</u>
양곡종합처리장
등 양곡
곡의 매입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22조의2(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 - 2.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 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

제3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1. ~ 6. (생 략)

② (생략)

<u>3.</u>	ਠੁੱ	 교급	식_	및	딘	:체급	급식에	양
· -	곡	공급	확	대를	= .	위한	· 사업	_
∄36	조	(과태	료)	1	_			

-_•

- 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$2. \sim 7.$ (현행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